

2026년 대구광역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 [예비]창업자 사업화지원사업 모집 공고

관광 융·복합 스타일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을 지원하고자 대구광역시 중구 2030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예비)창업자를 모집 하오니, 중구에서 창업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청년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6년 1월 30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1

##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중구 주력 산업인 관광 산업과 연계된 K-패션·뷰티·라이프 분야에 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창업 및 사업 성장을 지원
- 지원분야** : 관광·패션·뷰티·디자인 등 지역 창의 산업과 AI·3D·데이터 기반 기술혁신을 융합한 스타일테크(Style-Tech) 분야
- 지원대상 및 선정규모**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7년 이내)
  - 선정규모 : 10개사 정도
- 지원내용** : 창업아이템 사업화자금, 창업 교육, 네트워킹 등
  - 사업화자금 지원 : 최대 1천2백만원(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 예정)
    - ※ 지원방식 : 사업완료시 제출한 결과보고서, 최종 결과물 등에 대한 확인 검토 후 지원금 수행기업(서비스기관(업체), 위탁사업자)에 직접 지급 단, 지원금 수행기업은 사업장 주소지가 대구인 곳에 한함
    - ※ 부가가치세, 관세 등은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음
  - 프로그램 지원 : 창업 교육,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네트워킹 데이 등

## 2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공고 마감일 기준 대구광역시(주민등록등본 기준)에 거주
- 공고 마감일 기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또는 청년 대표  
※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고용보험이력내역서를 통해 취업상태 확인
- 제품(아이템)개발/판매에 관한 사업계획서 제출이 가능한 자
- 공고 마감일 기준 예비 창업자 또는 주사업장(본점)이 중구인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 후 6개월 이내 관내 사업자 등록 필수  
※ 초기 창업자의 경우 2019. 2. 27.~2026. 2. 26.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동일 지원사업 기 수혜자 지원 불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참고 1]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하여 신청前 창업여부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여부 확인 필수

### 신청(지원) 제외대상

- 공고일 이전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및 협약체결 후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포함  
\* 창업사업화지원사업 : 창업을 전제로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 소요자금을 창업기업에 지원하는 사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http://kssc.kostat.go.kr)) 참고
- 공고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기타 주관기관 및 대구광역시 중구청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3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선정 후 9개월 이내(협약일 ~ 2026. 11월 말 예정)

### ■ 세부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사업화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제품 제작, 지적권 취득, 광고선전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li> <li>* (사업화 지원) 최소 6백만원 최대 1천2백만원 /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li> </ul>	
	사용분야	세부내용
	지식재산권·제품인증·검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성분검사 등
	임차료	사업장, 장비활용 임차료
	광고선전	인쇄홍보물, 영상홍보물, 홈페이지 등
	시제품 제작	디자인, 설계, 금형 등
	경영·자문	경영전략, 사업화, 사업계획서, 기술자문 등
창업교육	· 창업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 실무 교육(세무, 경영, 마케팅 등) 운영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경영 전문가를 전담멘토로 지정하여, 창업 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 제공</li> <li>· 멘토링 참여 희망자 및 선정 된 기업에 한함</li> </ul>	
창업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트워킹) 청년 창업 기업 간의 경험 및 노하우 공유를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li> <li>· (기타 프로그램) 각종 특강 및 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추후 안내)</li> </ul>	

※ 교육·기타 창업 프로그램 등 미이수자는 지원 중단 및 사업화 자금 환수 조치(세부사항 추후 안내)

### 4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26. 1. 30.(금) ~ 2. 27.(금) 15:00까지

### ■ 신청·접수방법

- 전자우편접수 및 유선확인요망
- 접수시간 : 신청기간 내 24시간 접수가능, 2026. 2. 27.(금)은 15:00까지 접수  
(유선확인시간) 10:00~17:00(평일), 토·일·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전자우편(krh@kmu.ac.kr)
- 문 의 처 :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053-256-2030

## ■ 제출서류(붙임 양식 활용)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공통)	• 참가신청서 1부	붙임1
	• 사업계획서 1부	붙임2
	• 대표자 및 직원(팀원) 이력서 각 1부 *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공동/각자대표' 일 경우 각각 제출	붙임3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공동/각자대표' 일 경우 각각 제출	붙임4·5
	• 개인별 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 각 1부 *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공동/각자대표' 일 경우 각각 제출	붙임6
	• 성실의무이행 서약서 *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공동/각자대표' 일 경우 각각 제출	붙임7
	•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 *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공동/각자대표' 일 경우 각각 제출	붙임8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예비), 총사업자등록내역(기창업자) *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공동/각자대표' 일 경우 각각 제출	붙임9
	• 수행기업(기관) 견적서, 비교견적서, 과업지시서 등	-
필수 (추가)	• 총사업자등록내역 내 기재된 모든 사업자등록증(해당자)	붙임10
	• 총사업자등록내역 내 기재된 모든 폐업사실증명(해당자)	붙임11
	• 법인등기부등본(법인)(해당자)	붙임12
	• 고용·산재 보험 자격 이력내역서(예비창업자)(해당자)	붙임13

※ 반드시 붙임번호 순서대로 하나의 PDF파일로 접수

※ 파일명 '2026년 2030청년창업지원센터\_사업화\_대표명(기업명)\_지원서'접수  
(예시) 2026년 2030청년창업지원센터\_사업화\_홍길동(활빈당)\_지원서

※ 공고 내 게시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료 누락 및 상기 사항 미이행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5

## 선정평가 및 추진일정

### ■ 선정기준

- 아이디어의 참신성, 실현가능성 및 사업계획의 충실성
- 지원사업을 통한 시장진입이 가능한 상품성, 매출 실현 가능성
- 창업희망자의 의지 및 사업능력, 일자리 창출의 파급 효과성 등

### ■ 선정방법 : 선정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

- 1단계 : 적격 심사
  - 신청 적격여부(연령, 거주지, 중복수혜여부, 미취업자 여부 등)
  - 창업 아이템의 지원 대상 적합성(업종 등)
- 2단계 : 서류 심사
  - 제출된 사업계획서 서면 평가
- 3단계 : 발표 심사
  - 창업 아이디어,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기술성, 시장경쟁력 등 발표 평가

### ■ 추진일정

- (서류 합격 발표) 2026. 3. 12.(목) 예정 / 개별 전화 및 문자 안내 또는 중구청 및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 (발표 심사) 2026. 3. 17.(화) 예정
  - \* 이후 일정은 합격자에 한 해 별도 안내 예정
  - \* 신청인원 미달, 부적격자 발생 시 재 모집

### ■ 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선정 통보 /수정계획서	사업수행	보고서 제출 /검토	사업비 지급
1.30.(금) ~ 2.27.(금) 15:00	서류 : 3.10.(화) 발표 : 3.17.(화)	3.20.(금)	협약일 ~ 11.20.(금)	11.25.(수)	12.15.(화)

※ 상기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기간내 수행과제를 완료하여 결과보고서, 사업비 지급요청서, 최종 산출물, 용역수행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등) 등 관련 자료를 제출 기한내 제출해야 함
- 사업비는 직접사업비만 인정
  - ※ 부가가치세, 관세 등은 집행 불가
  - ※ 기타 사업화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정부지원금 불인정
-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물, 용역수행에 대한 증빙자료 등 사업비 지급을 위한 관련 자료를 기한내 미제출시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6 유의사항

- 사업 책임자는 기업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 관련 지침·기준 등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2026년도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타 사업 동시수행 불가)
  - \* 동시 선정 시, 각 사업의 협약체결일 이전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 하여야 하고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함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 및 사업 수행에 부적격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사·중간·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지원금의 부당 사용 등의 문제가 사업종료 후 발견될 경우 지원기업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수혜기업은 선정 평가위원회 평가에 따라 선정, 개별통보하고 전체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음

## 7

## 기타 참고사항

■ 운영기관 :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지원단)

■ 문 의 처

○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 053-256-2030

○ 대구광역시 중구청 경제과 일자리팀

☎ 053-661-2564

# 참고1

# 창업여부 기준표

※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 : cert.k-startup.go.kr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이종	창업아님 창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업
			폐업 3년 초과	창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업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참고2

## 지원제외대상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지원 대상 업종을 준용 하되, 아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업종	품목코드	해당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42205) 제외)
도매 및 소매업	451	자동차 판매업
	452中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중 소매업
	45302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	소매업
운수업	491, 2	철도 운송업, 육상 여객 운송업
	50中	수상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1中	항공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2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52915	주차장 운영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숙박 및 음식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63999中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비금융 지주회사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임대업	76110	자동차 임대업
	76299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 참고3 사실증명 및 폐업사실증명 발급 방법

▶ 창업여부 기준표에 의거, 창업기업 여부 확인

##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혹은 총사업자등록내역)(필수)

The screenshot shows the '민원증명' (Civil Proof) menu with the following items listed under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사실여부
- 공동사업자내역
- 대표자등록내역
-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시 지정사업자등록번호 직권발소
- 사업자등록변경내역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신고사실없음
- 전용계좌개설여부
-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사실여부
- 채납내역
- 총사업자등록내역**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 창업 당시 업종코드 확인

① 국세청홈텍스접속 → ② 로그인(대표자명으로) → ③ 전체메뉴 → ④ 증명·등록·신청 → ⑤ 민원증명 → ⑥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내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혹은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

※ 주의 : 신청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 처리, 평일 15시 이후 다음날 처리됨

## ■ 폐업사실증명(해당자)

The screenshot shows the '민원증명' (Civil Proof) menu with the following items listed under '즉시발급 증명':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모범납세자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업사실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 소득금액증명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
-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소득확인증명서(청년희망적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 폐업사실증명**

① 국세청홈텍스접속 → ② 로그인(대표자명으로) → ③ 증명·등록·신청 → ④ 민원증명 → ⑤ 즉시발급 증명 내 ‘폐업사실증명’ 발급

## 참고4

# 고용·산재 보험가입이력내역서 발급 방법

▶ 예비창업자 미취업 여부 확인

## 고용·산재 보험가입이력내역서(예비창업자)(해당자)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 ⓘ

+마이메뉴 추가

\*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본 자료는 고용·산재보험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경력증명 또는 타기관 제출 등 고용·산재보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보험구분  산재  고용

· 조회구분  상용  일용

조회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전체 이력 인쇄

신청

메일전송

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접속 → ② 로그인(개인) → ③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④ 고용/산재 및 상용 선택 후 조회 → ⑤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발급(전체이력(전체기간) 확인)

※ 주의 : 고용 및 산재 모두 제출